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9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위법) 및「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된 중복조항 삭제

- 2개 조항(연가당겨쓰기, 연가일수에의 공제)

나. 경조사 휴가 확대

- 출산(배우자) : 5일 ⇒ 10일

다. 육아시간 확대

- 생후 1년 미만(1일 1시간) ⇒ 5세 이하(24개월, 최대 2시간)

라. 기타 불합리한 용어 정비

-「공무원증규칙」⇒「국가공무원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감사실-271(2019.01.09.)〕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주민복지과-2359(2019.01.09.)〕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기간: 2019.01.24.~2019.02.12.〕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제23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 산	배우자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따른다.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총리령)에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간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별표3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연가일수의공제)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삭 제>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당해년도휴직기간(월) ×당해년도연가일수 12(월)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 ⑨ 삭 제	⑥ ~ ⑨ 삭 제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